

시설 사용 규정

규정 · 소관 총무인사팀 · 현행 규정

개정 2021. 2. 15. · 시행 2021. 3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5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전 4:15:58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

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관리)

본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.

제4조(사용신청 및 승인)

- ① 학생, 교직원, 외부단체에서 본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, 행사일시, 행사내용,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·재정위원회 결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-02-15>
- ② 외부단체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1-02-15>

제5조(사용자의 의무)

본교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용승인 목적이외 사용금지
2.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3. 질서 유지, 집기비품 및 시설 파괴행위 금지
4.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6조(사용료)

- ①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.
- ②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, 냉·난방비,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, 교직원, 동문회,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-02-15>
-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처로 입금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 기준은 [별첨1], [별첨2]와 같다. <개정 2021-02-15>

제7조(사용료 위약금)

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우천,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
2. 위약금 - 1호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%환불이지만 그 외의 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%, 해당주 50%, 당일 환불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.
3.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 할 수 있다. <개정 2021-02-15>

제8조(손해배상)

-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

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
제9조(기타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·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21-02-15>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전면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·서식

- [별첨3] 시설 사용 서약서.hwp
- [별첨1] 시설 사용료.hwp
- [별첨2] 차량사용료.hwp

별표·서식 파일은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세요.